

의안번호	제2378호
의결 년 월 일	2025. . .

의결사항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년월일	2025. 10. 28.

기획감사실 심사필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378호
----------	--------

제출년월일 : 2025. 10. 28.

제출자 : 보은군수

(소관부서 : 건강증진과)

1. 제안이유

- 보은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의 지정과 교육 및 홍보(안 제4조 및 제5조)
-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안 제6조)
- 과태료(안 제7조)

3.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또는 참고자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의4 및 제3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은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대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한 읍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읍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읍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 등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3과 같이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읍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지역축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읍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참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 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 유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이 소요됨에 따라 첨부제외서를
작성함
- 이는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육 경 희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